

직업훈련과 고용 통합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연구: 영국의 사회적 기업 중심

송연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BK 사업단 소속)

그동안 한국정부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직업훈련과의 연계 부족으로 고용의 지속성이 부족한 반면, 훈련을 강조한 자활사업은 고용능력 증진효과는 있으나 고용 창출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직업훈련이 결합된 고용통합형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합의된 개념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원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한계집단들의 기술개발과 고용을 돕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면서, 사회적 기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타겟대상의 고용능력에 적합한 형태로 유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교육훈련, 관리 평가를 통해 질관리와 재정지원 등을 하므로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법적 규정과 다양한 유형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전략이 필요한지를 모색해보았다.

영국에서 직업훈련과 고용창출의 방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여 영국의 '고용통합형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전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영국 분석은 영국 통상산업부와 EMES 네트워크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 관련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자료들을 정리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에는 직업훈련과 함께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서부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영구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 또한 법적 지위의 도입을 통해서 지원대상이 되는 사회적 기업의

규정과 유형을 명확히 하고 규정이나 유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하는 한편 자본조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 공공 조달시장 등에서 민간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노동시장정책의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인 사회적 기업국(social enterprise unit)의 설치와 2005년 지역사회이익회사법(community interest company)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자립시킬 것인가에 노력하면서 지역개발청, 부수상실의 지역 재생국, 뉴딜을 관할하는 고용연금부의 고용서비스 관할부문 등이 긴밀한 정책협조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한 수준이기에 사회적 기업을 훈련과 고용창출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경험에 기반하여,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고용취약계층의 훈련과 고용 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서비스 제공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특징인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 조직 내부와 외부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회사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하다. 둘째, 고용통합 사회적 기업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형화하는 한편,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 관리 기준 및 인프라가 필요하다. 셋째, 고용통합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질 관리를 위한 지원, 재정지원, 평가 등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훈련과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이 여러 노동시장 정책의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 규정, 재정, 평가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